

## <대학원 학칙 에너지환경대학원 (그린스쿨) 시행세칙> 개정(안)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 16 조 (학점취득)</p> <p>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논문트랙: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27학점</p> <p>2. 교과트랙: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3학점</p> <p>② <b>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9학점</b>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</p> <p>③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 &lt;개정 2020.3.1.&gt;</p>	<p>제 16 조 (학점취득)</p> <p>① 좌동</p> <p>② <b>박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</b>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필수 이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</p> <p>③ 좌동</p>	<p>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조정(39학점→30학점)</p>
<p>제19조 (과정별 수료학점)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 학점은 석사과정 논문트랙: 27학점 이상 (교과트랙: 33학점 이상), <b>박사과정 39학점</b> 이상,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이상이며 과정별 연구지도 학점은 교과과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. &lt;신설 2015.3.1., 개정 2020.3.1.&gt;</p>	<p>제19조 (과정별 수료학점)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 학점은 석사과정 논문트랙: 27학점 이상 (교과트랙: 33학점 이상), <b>박사과정 30학점</b> 이상,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이상이며 과정별 연구지도 학점은 교과과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. &lt;신설 2015.3.1., 개정 2020.3.1., 2024.9.1.&gt;</p>	<p>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조정(39학점→30학점)</p>
<p>제26조 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1. <b>전공과목 39학점</b> 이상을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</p> <p>2. “연구지도” 학점 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.</p>	<p>제26조 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1. <b>전공과목 30학점</b> 이상을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&lt;개정 2024.9.1.&gt;</p> <p>2. ~ 7. 좌동</p>	<p>수료요건 조정에 따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조정 (39학점→30학점)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3.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</p> <p>4. 영어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</p> <p>5. 입학년도로부터 8년(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)이 경과되지 않은 자 &lt;개정 2024.3.1.&gt;</p> <p>6. 학위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학사운영내규에 따른다. &lt;신설 2015.3.1.&gt;</p> <p>7.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&lt;신설 2021.3.1.&gt;</p>		
<p>제32조 (종합시험 응시자격)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수 이수과목 등 3과목 이내에서 시행한다.</p> <p>③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<b>27학점 이상</b>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</p> <p>④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5과목 내에서 시행한다. 다만, 본 대학원 및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석사학위 종합시험 과목이 응시과목과 동일한 경우 해당과목들은 박사학위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⑤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30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</p> <p>⑥ 석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5과목 내에서 시행한다.</p> <p>⑦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32조 (종합시험 응시자격) ① ~ ② 좌동</p> <p>③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<b>21학점 이상</b>을 평균평점 3.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. &lt;개정 2024.9.1.&gt;</p> <p>④ ~ ⑦ 좌동</p>	<p>종합시험 응시조건을 조정된 학점기준에 맞춰서 조정함. (27학점 → 21학점)</p>
<p>&lt; 신 설 &gt;</p>	<p><b>부 칙</b></p>	<p>부칙신설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	<p>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 개정: 제16조, 제19조제1항, 제26조제1호, 제32조제3항</p> <p>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이전 입학생에도 적용한다.</p>	